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 제정 : 2014. 1. 21.
- 개정 : 2015. 5. 13.
- 개정 : 2016. 3. 9.
- 개정 : 2019. 6. 1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3조의3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과정 및 입학정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3조(수업연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수업연한이 2년 인 학과는 2년 이상,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 운영 한다.

제4조(입학자격)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학과의 관련학점을 50%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과 졸업자로 인정한다.

제5조(입학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입학전형 세부절차는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6조(교육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며, 학점배분기준은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의 특성에 맞게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과이수)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 실험, 실습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72학점(2년제), 108학점(3년제)을 포함하여 13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매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1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마지막 학기는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이 132학점 이상일 경우 12학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제8조(졸업 및 수료)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 132학점을 이수한 자는 학칙 제24조에 근거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9조(수업료 및 입학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사과정에 준하는 수준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입학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학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2015. 8. 24.이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